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363
----------	------

제출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폐지이유

-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에 하남역사박물관의 조직 및 인력의 업무 이관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예 따라 불합리한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15년 7월 29일 ~ 8월 18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해당없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양희영
	팀장 직위·성명	문화재팀장 조연식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조연식 (790-5446)

《폐지 조례》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제정) 2008.07.08 조례 제 8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역사박물관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표 조사 등 용역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매장문화재”라 함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라 함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 안에서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4. “문화재 지표조사”라 함은 해당 공사지역에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용역사업의 대상 및 우선순위) ① 하남시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 제55조 및 제91조에서 정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시행자 등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호의 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2. 문화재 지표조사
3. 그 밖에 문화재 학술, 연구용역

② 제1항의 용역사업은 조사인력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수행하되 용역의뢰가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매장문화재의 발견 신고가 있거나 유적의 훼손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조사지역이 관내이고 의뢰인의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
2. 조사지역이 관내이고 의뢰인의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3. 조사지역이 관외이고 의뢰인의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
4. 조사지역이 관외이고 의뢰인의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제4조(문화재조사기관 지정 등) 박물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조사에 필요한 기준 인력,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 ① 조사인력은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보존처리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은 용역사업량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 사용하고, 보존처리요원의 경우 자체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지도위원회 등) ① 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조사지역 및 유적·유구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용역사업 수행 중 조사지역의 유적·유구의 특성에 따라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필위원, 조사위원, 외부조사원 등 전문위원을 위촉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 위촉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용역사업의 수행) ① 박물관은 용역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이 끝나면 법 제5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비용 등) ①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용역비용의 산출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의뢰인이 제3조제2항제1호인 경우에는 학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용역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선납한다. 다만 용역사업 수행중 지도위원회의 자문결과 등 조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의 계약 및 비용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입 및 지출) ① 용역비용의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지출은 「지방재정법」 및 「하남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용역사업별 수입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